

##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

구글 법무팀으로부터 2014. 2. 22. 답변에는 청구인들이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담겨 있지 않아 다시 한번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또는 Gmail서비스 이용정보(메일착발신대상, 메일내용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Gmail서비스 이용정보(메일착발신대상, 메일내용 등)를 미합중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구글코리아가 처리하는지, 구글 본사가 처리하는지 여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궁금한 사항은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및 청구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Gmail서비스 이용정보(메일착발신대상, 메일내용 등)를 구글 이외의 회사,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이고, 이는 단지 미합중국 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내에서 거주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구글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구글의 서비스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절차를 구글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구글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및 Gmail서비스 이용정보를 미합중국 정부를 포함한 다른 회사,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구글은 아무런 통제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Gmail서비스 이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구글의 서비스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된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난번 구글의 답변에 만족할 수 없고, 우리들의 개인정보 및 Gmail서비스 이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길 원합니다.

또, 구글코리아는 대한민국에서 구글의 지사로 기능하고 있고, 구글서비스의 온라인광고상품 판매 및 다이렉트 마케팅(DM)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업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정보에 대한 접근·관리·이용에 기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코리아가 직접 구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나 Gmail서비스 이용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하는 이상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요구를 다시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Google계정상 개인정보, Gmail서비스 이용정보(메일착발신대상, 메일내용 등)를 구글 이외의 회사,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계정 : a\*\*\*\*\*@gmail.com, a\*\*\*\*\*@gmail.com, a\*\*\*\*\*@gmail.com, m\*\*\*\*\*@amnesty.or.kr, j\*\*\*\*\*@amnesty.or.kr, n\*\*\*@action.or.kr, r\*\*\*\*\*@gmail.com

2. 만약 위 계정의 개인정보, Gmail서비스 이용정보(메일착발신대상, 메일내용 등)를 구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 1, 2항에 관한 답변을 지체없이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 20lawyers@gmail.com)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